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129
----------	------

제출일자 : 2019. 9. 6.
제출자 : 달성군의회

1. 의결주문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범위 확대를 통해 국가유공자와 가족을 예우하여 이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시설 이용요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여성문화복지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86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4조(사용료의 감면)에 의거 국가유공자 감면대상 확대 조정(별표 3 신설)
- 나. 수영장 이용자에 대한 단체감면 규정 신설
- 다. 안 별표 1,
 - 문화강좌 프로그램 수강료 조정(월60,000원 → 월100,000원)
 - 사물함 이용요금 조정(3,000원 → 5,000원)
 - 시설사용료 조정 및 추가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
-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 9)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4조

나. 예산조치 : 별도예산 필요 없음.

다. 기타사항

-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 2)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
- 3)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 4)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5)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9. 8. 14. ~ 9. 3(20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6)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제3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영장, 헬스장에 한하여 ” 를 “제11조제1항의 사용료를 징수함에 있어 수영장, 헬스장에 한하여 별표3의 구분에 따라” 로 한다.

제12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수영장 1일 입장 이용 시 동일 단체 소속 30명 이상의 이용자에 대해서는 단체감면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을 중복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제3항의 “1호” 부터 “10호” 까지 삭제한다.

“별표 1” 과 “별표 3” 을 각각 다음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1) 시설이용료(수영장·헬스장)

(단위 : 원)

구분		성인 (만19세이상)			중.고생 (만13~만18세)			유아,초등 (만12세 이하)			아쿠아로빅		1일 입장 요금			비고
수영장	이용요금 (월)	주5회 <u>77,000</u>	주3회 <u>54,000</u>	주2회 <u>39,000</u>	주5회 <u>69,000</u>	주3회 <u>50,000</u>	주2회 <u>39,000</u>	주5회 <u>64,000</u>	주3회 <u>46,000</u>	주2회 <u>33,000</u>	주3회 <u>54,000</u>	주2회 <u>39,000</u>	성인 <u>3,200</u>	중고생 <u>2,200</u>	유아초등 <u>1,600</u>	
헬스장	이용요금 (월)	<u>50,000</u>														
사물함	이용요금	1개월 이상~3개월 미만 5,000원														
체형분석	이용요금	<u>1회 5,500원</u>														

부가가치세금액(10%)포함

※ 장기등록(3개월 이상) 이용회원에 대하여는 여성문화복지센터 운영규정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운영시간에 증감이 있을 경우 이용료는 기준액에 비례하여 증감할 수 있음.

※ 주 ○ 수영장 사용시간 구분

- 평 일 : 06:00 ~ 22:00
- 토 요 일 : 06:00 ~ 18:00
- 일, 공휴일 : 09:00 ~ 18:00(월2회 휴관)

○ 헬스장 사용시간 구분

- 평 일 : 06:00 ~ 22:00
- 토 요 일 : 06:00 ~ 18:00

2) 문화강좌 프로그램 수강료

구분	이용료	비고
문화강좌 이용료	100,000원 이하	·주1회 한달 기준
기타	·프로그램별 기준액은 별도로 정함. ·운영시간에 증감이 있을 경우 수강료는 기준액에 비례하여 증감할 수 있음. ·교재 및 재료비 별도	

3) 시설사용료

가. 대관료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강 당	오 전	30,000	
	오 후	50,000	
	야 간	70,000	
회의실 및 강의실	1회(2시간)	10,000	

※주 1)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본다.

2) 사용시간 구분

가. 오전 - 09:00 ~ 12:00

나. 오후 - 13:00 ~ 17:00

다. 야간 - 18:00 ~ 22:00

라. 1일 - 09:00 ~ 22:00

3)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사용하는 일반인에 대하여는 당기준 사용료의 50%를 가산함.

4)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비, 행사준비를 위한 사용시는 당해 기준 사용료의 50%로 함.

5) 초과 시 사용료 가산 : 매시간 초과마다 사용료의 30%를 가산함.

나. 부속시설 사용료

(단위 : 원)

설 비 명		기준	사용료	비고
피아노		1회	30,000	
무대조명		1회	25,000	
음향	빔프로젝트	1회	20,000	
	유선마이크	1회	개당 5,000	
	무선마이크	1회	개당 10,000	
	CD 플레이어	1회	10,000	
무대시설	보면대	1회	10,000	
	의자	1회	10,000	
냉·난방		1회	80,000	

※ 주 1)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본다.

2) 연습을 위한 사용은 기준 사용료의 50%로 함.

(피아노 조율비용은 사용자가 부담)

3) 소모품(건전지, CD, DVD, 테이프 등)은 사용자 부담으로 함.

4) 보면대 및 의자는 10개 이상 사용 시 부과함.

【별표 3】

사용료 등의 감면(제12조 관련)

구 분	감면율 (할인율)	비 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	50%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	5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및 그 배우자	50%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 민주유공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	5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	5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 후유증환자 중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고궁 등 이용증 소지자	5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상자증 소지자 (의상자 1급 또는 2급의 경우 활동보조인 1명 포함)또는 의사자유족증 소지자	5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귀환용사증 또는 귀환용사가족증 소지자	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50%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50%	
「아동복지법」에 의한 소년소녀가정	50%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50%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이 월 회원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50% 이내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제12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③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영장, 헬스장에 한하여 이용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 10. (생략)

④ (생략)

<신설>

【별표 1】

1) 시설이용료(수영장.헬스장)

구분	성인 (만9세이상)	중.고생 (만3~만8세)	유아,초등 (만2세 이하)	아쿠아 로빅	1일 입장 요금	비고
수영장 이용 요금	생략					
헬스장 이용 요금	생략					
사물함 이용 요금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3,000원					
체형 분석 요금	생략					

※ 장기등록(3개월 이상) 이용회원에 대하여는 여성문화복지센터 운영규정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운영시간에 증감이 있을 경우 이용료는 기준액에 비례하여 증감할 수 있음.

※ 주 ○ 수영장 사용시간 구분

- 평 일 : 06:00 ~ 22:00

- 토 요 일 : 06:00 ~ 18:00

- 일,공휴일 : 09:00 ~ 18:00(월2회 휴관)

○ 헬스장 사용시간 구분

- 평 일 : 06:00 ~ 22:00

- 토 요 일 : 06:00 ~ 18:00

개정안

제12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③--- 제11조제1항의 사용료를 징수함에 있어 수영장, 헬스장에 한하여 별표3의 구분에 따라-----

1. ~ 10. 삭제

④ (현행과 같음)

⑤ 수영장 1일 입장 이용 시 동일단체 소속 30명 이상의 이용자에게 대해서는 단체감면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을 중복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1】

1) 시설이용료(수영장.헬스장)

구분	성인 (만9세이상)	중.고생 (만3~만8세)	유아,초등 (만2세 이하)	아쿠아 로빅	1일 입장 요금	비고
수영장 이용 요금	(현행과 같음)					
헬스장 이용 요금	(현행과 같음)					
사물함 이용 요금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5,000원					
체형 분석 요금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

2) 문화강좌 프로그램 수강료

구분	이용료	비고
문화강좌 이용료	60,000원 이하	·주1회 한달 기준
기타	·프로그램별 기준액은 별도로 정함. ·운영시간에 증감이 있을 경우 수강료는 기준액에 비례하여 증감할 수 있음. ·교재 및 재료비 별도	

3) 시설사용료(대관시설)

가. 대 관 료

구분	기준	사용료	비고
강당	오전	30,000	
	오후	50,000	
	야간	70,000	
회의실 및 강의실	1회(2시간)	10,000	
부속 설비	피아노	1회	30,000
	빔프로젝트	1회	20,000
	조명	1회	25,000
	냉·난방기	1회	80,000

- ※주 1)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본다.
 2) 사용시간 구분
 가. 오전 - 09:00 ~ 12:00
 나. 오후 - 13:00 ~ 17:00
 다. 야간 - 18:00 ~ 22:00
 라. 1일 - 09:00 ~ 22:00
 3)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사용하는 일반인에 대하여는 당기준 사용료의 30%를 가산함.
 4)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비, 행사준비를 위한 사용시는 당해 기준 사용료의 50%로 함.
 5) 초과 시 사용료 가산 : 매시간 초과마다 사용료의 20%를 가산함.

개정안

2) 문화강좌 프로그램 수강료

구분	이용료	비고
문화강좌 이용료	100,000원 이하	(현행과 같음)
기타	(현행과 같음)	

3) 시설사용료(대관시설)

가. 대 관 료

구분	기준	사용료	비고
강당	오전	30,000	
	오후	50,000	
	야간	70,000	
회의실 및 강의실	1회(2시간)	10,000	

- ※주 1)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본다.
 2) 사용시간 구분
 가. 오전 - 09:00 ~ 12:00
 나. 오후 - 13:00 ~ 17:00
 다. 야간 - 18:00 ~ 22:00
 라. 1일 - 09:00 ~ 22:00
 3)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사용하는 일반인에 대하여는 당기준 사용료의 50%를 가산함.
 4)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비, 행사준비를 위한 사용시는 당해 기준 사용료의 50%로 함.
 5) 초과 시 사용료 가산 : 매시간 초과마다 사용료의 30%를 가산함.

나. 부속시설 사용료

섬비명	기준	사용료	비고
피아노	1회	30,000	
무대조명	1회	25,000	
음향	빔프로젝트	1회	20,000
	유선마이크	1회	개당 5,000
	무선마이크	1회	개당 10,000
	CD플레이어	1회	10,000
무대 시설	보면대	1회	10,000
	의자	1회	10,000
냉·난방기	1회	80,000	

- ※주 1)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본다.
 2) 연습을 위한 사용은 기준 사용료의 50%로 함.
 (피아노 조율비용은 사용자가 부담)
 3) 소모품(건전지, CD, DVD, 테이프 등)은 사용자 부담으로 함.
 4) 보면대 및 의자는 10개 이상 사용 시 부과함.

현행	개 정 안																																													
【별표 3】	【별표 3】																																													
신 설	사용료 등의 감면(제12조 관련)																																													
	<table><tr><th>구 분</th><th>감면율 (할인율)</th><th>비고</th></tr><tr><td>「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td><td>50%</td><td></td></tr><tr><td>「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td><td>50%</td><td></td></tr><tr><td>「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및 그 배우자</td><td>50%</td><td></td></tr><tr><td>「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 민주유공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td><td>50%</td><td></td></tr><tr><td>「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td><td>50%</td><td></td></tr><tr><td>「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 후유증환자 중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고궁 등 이용증 소지자</td><td>50%</td><td></td></tr><tr><td>「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사자증 소지자 (의상자 1급 또는 2급의 경우 활동보조인 1명 포함)또는 의사자유족증 소지자</td><td>50%</td><td></td></tr><tr><td>「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귀환용사증 또는 귀환용사가족증 소지자</td><td>50%</td><td></td></tr><tr><td>「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td><td>50%</td><td></td></tr><tr><td>「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 포함)</td><td>50%</td><td></td></tr><tr><td>「아동복지법」에 의한 소년소녀가정</td><td>50%</td><td></td></tr><tr><td>「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td><td>50%</td><td></td></tr><tr><td>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이 월 회원 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td><td>10%</td><td></td></tr><tr><td>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td><td>50% 이내</td><td></td></tr></table>	구 분	감면율 (할인율)	비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	50%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	5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및 그 배우자	50%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 민주유공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	5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	5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 후유증환자 중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고궁 등 이용증 소지자	5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사자증 소지자 (의상자 1급 또는 2급의 경우 활동보조인 1명 포함)또는 의사자유족증 소지자	5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귀환용사증 또는 귀환용사가족증 소지자	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50%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50%		「아동복지법」에 의한 소년소녀가정	50%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50%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이 월 회원 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50% 이내	
구 분	감면율 (할인율)	비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	50%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	5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및 그 배우자	50%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 민주유공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	5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	5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 후유증환자 중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고궁 등 이용증 소지자	5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사자증 소지자 (의상자 1급 또는 2급의 경우 활동보조인 1명 포함)또는 의사자유족증 소지자	5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귀환용사증 또는 귀환용사가족증 소지자	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50%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50%																																													
「아동복지법」에 의한 소년소녀가정	50%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50%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이 월 회원 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50% 이내																																													

참고**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법 제 67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1.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2.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제8조에 따른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3.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10과 같다.
-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제101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증이나 국가유공자 유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별표 10] <개정 2009.8.13>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86조제2항 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100분의 100
2. 국공립 공원	100분의 100
3. 독립기념관	100분의 100
4. 전쟁기념관	100분의 100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100분의 100
6. 국공립 수목원	100분의 100
7. 국공립 자연휴양림	100분의 100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은 제외한다)	100분의 50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50

□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3조(사용료 등의 감면)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유공자증·유공자유족증 또는 해당 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를 소지한 사람(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귀환용사증 또는 귀환용사가족증 소지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참전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및 그 배우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고궁 등 이용증 소지자
- 의상자증 소지자(의상자 1급 또는 2급의 경우 활동보조인 1명 포함) 또는 의사자유족증 소지자